

1. 개정이유

「항만법」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을 분법하고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등 「항만법」을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함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비관리청 전용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허가 조건·항만구역 내 출입통제 절차 및 방법·신기술의 범위 및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해지 후 처리 가능한 잔무의 범위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비관리청 전용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허가 조건(안 제18조)
- 항만시설 등의 전부에 대한 임대가 아닌 경우, 항만시설 등의 용도 및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등 비관리청 전용목적 항만시설 등의 임대를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함.
- 나.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 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안 제23조)
-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를 하려고 할 때에는 30일 전에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위치 및 위치도 등을 관보, 정보통신매체, 표지판 등에 공고하도록 함.
- 다. 지원 대상 신기술의 범위 및 선정 절차(안 제24조)
- 적용 장려 대상 신기술의 범위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건설

기술 진흥법」,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으로 규정하고, 지원대상 신기술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 라.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해지 후 잔무의 범위(안 제37조)

항만배후단지 입주계약 해지 후 처리 가능한 잔무의 범위를 계약 해지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 계약에 대한 이행업무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등으로 한정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만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8)에서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체육시설
5.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및 장비
6. 항만개발사업 시에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 투기(投棄)를 위한 시

7. 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관측시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한 때
 2.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한 때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년 단위의 항만개발 및 투자계획
2. 항만별 항만개발의 내용, 규모 및 소요자금 등 세부내용
3. 그 밖에 항만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말한다.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3.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

③ 영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투자비 보전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투자비 보전계획서

2.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④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시행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도면만 첨부할 수 있다.

1. 평면도

2.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

2. 사업계획의 적정성: 건설계획 및 운영계획

3. 참여자의 적정성: 실수요자 참여 여부 및 항만 운영·사용 실적

4. 총사업비의 적정성: 산출근거 및 총사업비 집행계획

제6조(공고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영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안전 확보 및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개발사업은 그 시기에 관계없이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 중 관할 항만개발사업에 대하여 인터넷과 관보를 통하여 허가를 위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심사 기준

3. 허가시기

4. 허가신청 요령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내용의 변

경을 허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에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8항에서 “항만개발사업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5조제5항 각 호의 기준

2.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말한다)
2. 항만명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5. 항만개발사업기간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제8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변경 포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공사실시설계도서상의 총사업비 명세, 예정공정표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9조(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① 법 제11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항만개발사업 여건의 변화 등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의 귀책사유 없이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시기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시

기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시기를 연장하는 경우로서 비관리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 등)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문만 해당한다)
6.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만 해당하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전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도면 및 사진

제12조(귀속대상 외의 전용 항만시설) ① 영 제2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
2. 비관리청이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액체화물저장시설

② 영 제2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가 화주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화물의 유통시설·
판매시설

2. 비관리청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일로, 저유시설, 가스저장시설 및 액체화물저장
시설

제13조(감정평가업자의 지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1.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토지 조성공사의 준공 또는 준공예정 연월일
3. 감정평가업자의 추첨 일시 및 추첨 장소
4. 지정대상 감정평가업자의 수
5. 감정평가업자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 감정평가업자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
신고증의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했을 때에

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
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
공고하되, 재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
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
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
정평가업자를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비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5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관리청이 고의로 개발사업을 지연시킨 경우
2. 비관리청의 과실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준공확
인을 받지 못한 경우
3.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부족으로 항만개발사업이 지연되
는 경우

제15조(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비
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 준설에 드는 비용 등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 준설 및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2.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의 접안수역 준설 및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제16조(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2. 축척 1,200분의 1의 사용위치 실측도

제17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전용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임대허가)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의 토지·항만시설에 대한 임대허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허가를 받은 토지·항만시설에 대한 재임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1. 전용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의 전부에 대한 임대가 아닐 것

2. 토지·항만시설의 임대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토지·항만시설의 임대가 항만종사자 및 항만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경우

나. 비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다. 동일 경로에 액체화물이송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토지·항만시설을 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임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비관리청이 전용목적의 토지·항만시설에 대한 임대허가를 받은 경우 임대료 부과, 임대료율, 임대료지급 등에 관해서는 법 제43조를 준용한다.

제19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수신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양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양수 재산명

2. 양수 재산의 위치
3. 양수 사유 및 양수 재산의 취득일
4. 양수 재산의 양수가액
5. 양도자 정보(성명, 소속, 주소, 업종 등)
6. 양수자 정보(성명, 소속, 주소, 업종 등)
7. 그 밖에 양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20조(항만운영세칙)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항만운영세칙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항만운영계획도(항계선, 항로, 정박지, 계류시설, 하위항만의 명칭 등을 포함한다)
3. 선박 입출항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4.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항만대장)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 수심을 표시한 축척 5,000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항만구역

2. 행정구역의 명칭과 경계선
3. 철도 및 도로의 표시
4. 항만시설의 종류 및 위치
5. 항로 및 정박지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항만구역의 변동 및 항만시설의 신설, 멸실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제22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신청)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3조(출입통제구역의 지정 등)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에는 그 지정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출입통제구역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고 관보,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출입통제구역의 지정 사유
2.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3. 출입통제구역의 지정기간
4.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입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신기술 지원절차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말한다.

② 항만개발사업에 적용할 신기술과 시험시공 지원 대상 신기술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평가기준, 시험시공 지원기술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을 포함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되어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된 선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에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에 실시한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준설선(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준설선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준설선은 제외한다)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검사증은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로 본다.

⑤ 대통령령 제29139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검사증의 유효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⑥ 항만건설작업선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은 제외한다)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前後) 3개월 이내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작업선에 대

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6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로·선회장 등 선박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2. 임항교통시설, 화물장치장 등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등 여객터미널이용료의 징수대상시설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시설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사용료 대납경비)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를 일괄하여 대납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납업무 경비는 사용료 납입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납업무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월 단위의 대납 경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항만배후단지 지정요청서)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5호서식의 항만배후단지 지정요청서에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29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제16호서식과 같다.

제30조(준공확인 신청 등)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3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등) 영 제60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제19호서식과 같다.

제32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토지매도청구서에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관리기관 지정신청) 영 제68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과 같다.

제34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입주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제35조(시정기간) 법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36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 ① 법 제72조 및 영 제73조제1항·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가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나 공장·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잔무처리업무) 법 제7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처리업무”란 해지 당시의 수출 또는 수입 계약에 대한 이행업무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제38조(공동시설 관리비 등) 법 제77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로, 가로등, 울타리, 체육시설, 운동장을 말한다.

제39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영 제78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遊水池) 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제40조(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4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의 통지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③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42조(재결신청서)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43조(공사 등의 착수 신고) 영 제89조제3항에 따른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28호 서식과 같다.

제44조(권리·의무의 이전 인가신청) ①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권리·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도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으로 영 제4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및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한 이전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수수료) ① 법 제105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5천원(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4천원)으로 하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4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신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중 "「항만법」 제2조제15호"를 "「항만법」 제2조제8호"으로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호나목(4) 중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를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제11호 및 제125조제9호 중 "「항만법」 제26조"를 각각 "「항만법」 제33조"로 한다.

④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9조의2 중 "「항만법 시행령」 제25조의3"을 "「항만법 시행

령」 제42조"로 한다.

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3조"로 한다.

⑥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46조"로 한다.

⑦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6조"로, "항만법 시행령 제20조"를 "「항만법 시행령」 제26조"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호안등"을 "호안(해안보호등을 말한다) 등"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돌핀"을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로", "램프등"을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으로 하고,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양장"을 "소형선 부두"로 한다.

⑧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24조부터 제28조"를 "「항만법」 제38조부터 제39조"로 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을 "「항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항만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⑨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2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하고, 제27조제1항제1호 중 "「항만법」 제30조제1항 본문"을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⑩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⑪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⑫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제2호 중 "국가관리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한다.

행정처분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공사중지 또는 항만시설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1호	허가·지정 또는 승인 취소	-	-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2)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4)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				

행자의 지정				
5)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6)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나.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2호	경고	공사중지 3개월	허가·승인 취소
다. 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신고 및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3호	경고	공사중지 3개월	공사중지 6개월
라.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4호	경고	허가취소	
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받은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5호	경고	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허가 취소
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6호	경고	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허가 취소
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부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7호	경고	항만시설 사용중지 3개월	허가 취소
아. 사업시행자가 법 제5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법 제83조 제1항제8호	경고	-	-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항	항만명	
	개발사업종류	
	개발사업목적	
	개발사업장소	
	개발사업규모	
	시설이용계획	
	개발사업기간	~ (일간)
	개발사업방법	
	변경사유 (변경허가 신청 시에만 작성)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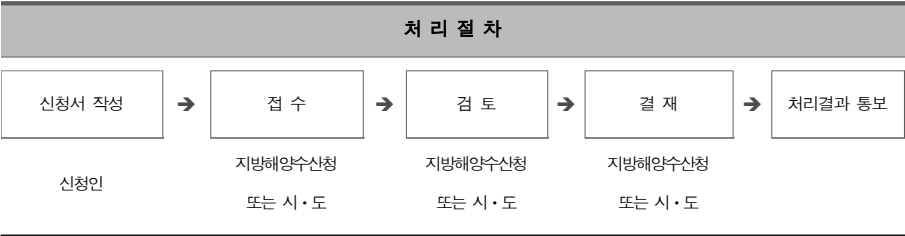
「항만법」 제9조제2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업계획 및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나.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다.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는 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 2. 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그 산출명세 3.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나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또는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5. 투자비 보전계획서(「항만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항만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000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000원
------	---	--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 허가(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항	항만명	
	개발사업종류	
	개발사업목적	
	유지·보수 구간	
	개발사업규모	
	개발사업기간	~ (일간)
	유지·보수 공사에 수반되는 항만시설의 사용 내역 등 그 밖의 사항	

「항만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평면도	수수료
	2.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000원
	3.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 우: 4,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검 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결 재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처리결과 통보
---------------	---	--------------------------	---	--------------------------	---	--------------------------	---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항만개발 사업실시 계획	항만명						
	개발사업종류						
	항만개발사업명						
	개발사업장소						
	개발사업목적						
	개발사업규모	시설					
	개발사업규모	규모					
	시설이용계획						
	개발사업 기간	~ (일간)					
	개발사업 방 법						
그 밖의 사항							

항만시설 사용	사용 시설	명칭					
		수량					
		위치					
	사용 목적						
사용 기간	~ (일간)						

「항만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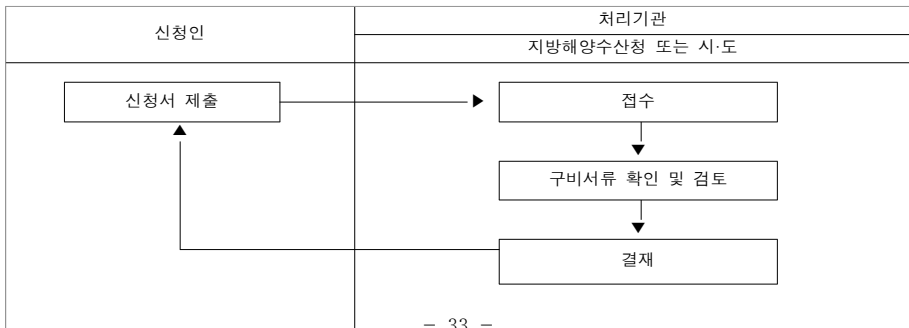
1. 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자원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적은 서류
8.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법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에 한정합니다)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계획서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외에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항만개발 사업실시 계획	항만명					
	개발사업 종류					
	항만개발사업명					
	개발사업장소					
	개발사업 목적					
	개발사업 규모	시설				
		규모				
	시설이용계 획					
	개발사업 기간	~ (일간)				
	개발사업 방법					
	그 밖의 사항					

변경되는 내용	항만개발사업 시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행자의 성명 또				
	는 주소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총사업비	당초		변경	
	사업의 면적	당초		변경	
	위치	당초		변경	
	사업기간	당초		변경	
	기타				

「항만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항만개발 사업실시 계획	항만명						
	개발사업 종류						
	항만개발사업명						
	개발사업장소						
	개발사업 목적						
	개발사업 규모	시설					
		규모					
	시설이용계획						
	개발사업 기간	~ (일간)					
	개발사업 방법						
	그 밖의 사항						

항만시설 사용	사용 시설	명칭					
		수량					
		위치					
	사용 목적						
	사용 기간	~		(일간)			

「항만법」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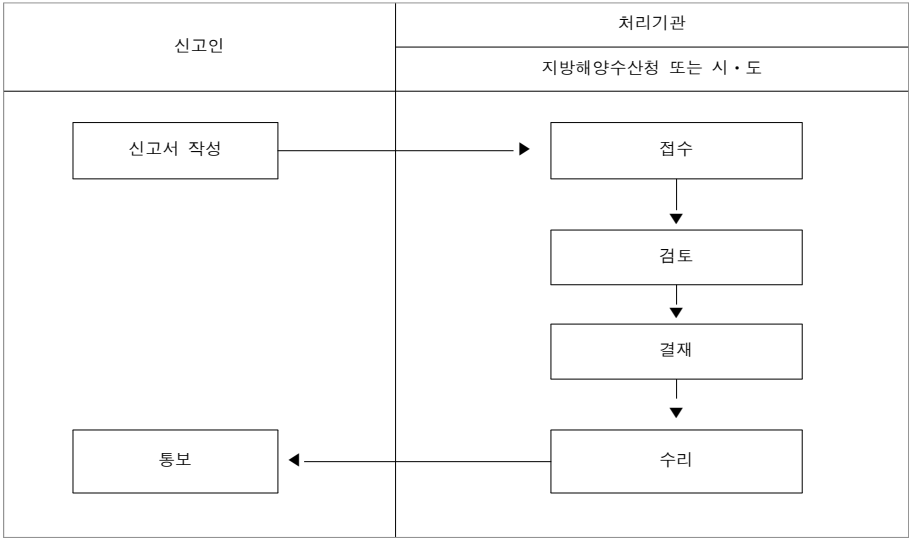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공사실시설계도서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1.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변경 포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공사실시설계도서상의 총사업비 명세, 예정공정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항만명	
	개발사업 종류	
	개발사업 장소	
	개발사업 규모	
	개발사업 목적	
	총사업비	
	개발사업 기간	착공 . . . (일간) 준공 . . .
	귀속시설명세	
그 밖의 사항		

「항만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을 받기 위하여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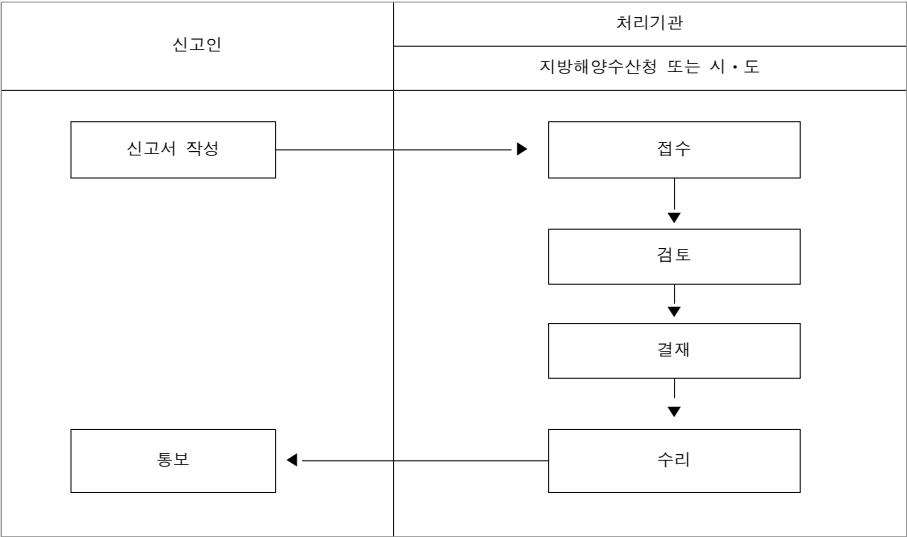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 총사업비 명세서(「항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합니다) 6.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항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만 해당하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와 제72조를 준용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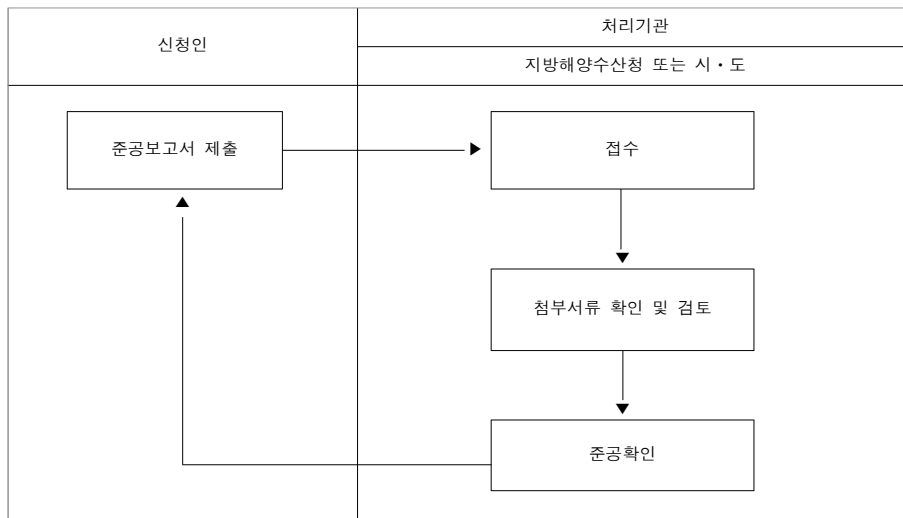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준공확인증명서

시행자 성명:
주소:

귀하가 시행한 항만개발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하고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1. 항만명(위치):
2.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 장소:
4. 항만개발사업 기간(준공 연월일):
5. 준공시설(귀속 여부):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직인

준공 전 사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승인(신고)일		
	위치		
	준공예정일		
	사용시설내용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사용목적		

「항만법」 제12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2. 해당 토지 또는 시설 도면 및 사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신고인	→	접 수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검 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결재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수리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통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가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시설의 명칭		
	소 재 지		
	사업허가일		
	사업준공일		
	사용목적		
	사용규모		
	사용기간		

「항만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축척 1,200분의 1의 사용위치 실측도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인	→	접 수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검 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결 재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처리결과 통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토지매도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항만배후단지의 명칭							
매도청구 요청대상 지역	매도목적 및 필요성						
	위치						
	면적						
	매도청구 요청 대상 지역의 활용 용도	대상 지역					
		활용 용도					
개발시설							
유치시설							

「항만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매도청구한 토지의 예상 매각가격 산출서	수수료 없음

전용목적 토지·항만시설의 임대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임대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임차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내용	임대의 목적	[] 항만종사자 및 항만이용자의 편의증진 [] 동일 경로에 액체화물이송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목적물			
	임대금액			

그 밖의 특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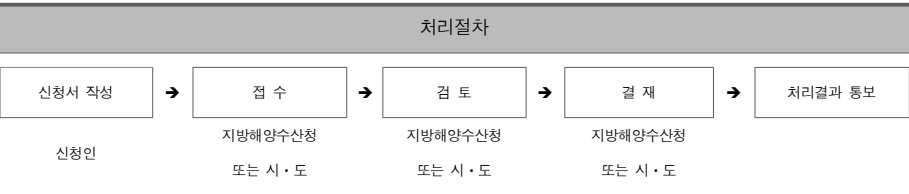
「항만법」 제1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관리청 전용목적 토지·항만시설의 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임대허가 신청서 1부,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양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양도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소속			
	업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소속			
	업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양수 내용	양수 재산명			
	재산의 위치			
	양수사유	[]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년 경과 []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처분 []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재산의 취득일			
	재산의 양수가액			

「항만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양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검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 과완→결재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처리결과 통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항만대장

항명						위치				항종					개항 연월일				
항계						조위	최대만조면적	삭망평균만조위	평균수위	최대간조위	삭망평균간조위	항내수면적	정온수면적	최대풍속풍향	최대파고	비고			
							㎡	m	m	m	m	㎡	㎡	m/sec	m				
현재시설	접안시설	명칭	구조	연장	투자액	시설연도	수심	D/W/T 계선능력	N/T 하역능력	임항철도	허간		야적장	급수시설	조명	임항도로	하역시설	비고	
											동수	평수							
	외곽시설																		
		준설	연간자연매물량						연도별 준설실적 및 준설계획										잔량
				년	년		년		년		년		년						
장래계획	명칭	위치	전체계획		연도별계획														
			사업량	금액	년		년		년		년		년		년				

364mm × 257mm[인쇄용지(특급) 120g/㎡]

연도 능력 시설별	연도 시설별	현재(년)					종전(시설 변경연도 기준)														
							년					년					년				
		안벽	물양장	잔교	물핀등	계	안벽	물양장	잔교	물핀 등	계	안벽	물양장	잔교	물핀 등	계	안벽	물양장	잔교	물핀 등	계
1. 하역	능력																				
(천톤)	실적																				
2. 동시접안	능력(척)																				
	5백톤 미만																				
	3천톤 ♪																				
	5천톤 ♪																				
	7천톤 ♪																				
	1만톤 ♪																				
	2만톤 ♪																				
	5만톤 ♪																				
	5만톤 이상																				
3. 모박능력(척)		항	항	항	항	계	항	항	항	항	계	항	항	항	항	계	항	항	항	항	계
	5백톤 미만																				
	3천톤 ♪																				
	5천톤 ♪																				
	7천톤 ♪																				
	1만톤 ♪																				
	2만톤 ♪																				
	5만톤 ♪																				
	5만톤 이상																				

47

364mm × 257mm[인쇄용지(특급) 120g/㎡]

구분 시설별	구분 시설별	현재(년)			종전(시설 변경연도 기준)								
		수 량(개)		연 장(m)	년			년			년		
					수량(개)		연장(m)	수량(개)		연장(m)	수량(개)		연장(m)
4. 안벽													
5. 물양장													
6. 잔교													
7. 돌핀등													
		동수 (동)	면적 (㎡)	능력(톤)	동수(동)	면적 (㎡)	능력(톤)	동수(동)	면적 (㎡)	능력(톤)	동수(동)	면적 (㎡)	능력(톤)
8. 헛간													
9. 야적장													
10. 저목장													
11. 저탄장													
12. 위험물저장장													
		척(대) 수	마력 (규격)	총톤수 (G/T) 시간당능력 (T/H)	척(대)수	마력 (규격)	총톤수 (G/T) 시간당능력 (T/H)	척(대)수	마력 (규격)	총톤수 (G/T) 시간당능력 (T/H)	척(대)수	마력 (규격)	총톤수 (G/T) 시간당능력 (T/H)
13. 예선(이접안용)													
14. 예인선(하역용)													
15. 기중기선													
16. 부선													
17. 양곡하역기													
18. 고철하역기													
19. 컨트리크레인													
20. 석탄하역기													
21. 시멘트하역기													
22. 기중기													
23. 지게차													
24. 페이로더													
25. 그 밖의 하역기													

364mm × 257mm[인쇄용지(특급) 120g/㎡]

연도 산업구분	현재(년)	종전(최근 5년간)				
		년	년	년	년	년
① 임해도시인구(명)						
② 항만근로자(명) 가. 해상 나. 부두 다. 기타 라. 계						
③ 운수업(화물자동차) 가. 인구(명) 나. 대수(대) 다. 적재능력(M/T)						
④ 수산업 가. 인구(명) 나. 어선(척) 다. 어획량(톤)						

364mm × 257mm[인쇄용지(특급) 120g/㎡]

⑤ 임해공장생산량(M/T) 가. 해송량 나. 육송량 다. 계												
⑥ 후방수송화물량(M/T) 가. 철로 나. 공로 다. 항공 라. 내륙수로 마. 계												
⑦ 선박수리시설(척)	건선거	조선대	건선거	조선대	건선거	조선대	건선거	조선대	건선거	조선대	건선거	조선대
5백톤 미만												
3천톤 미만												
5천톤 미만												
1만톤 미만												
2만톤 미만												
5만톤 미만												
5만톤 이상												

364mm × 257mm[인쇄용지(특급) 120g/㎡]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주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임원 및 직원의 수						
	신청 이유						
	사업예정지역(항만명)						
법인의 사업범위(종류)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항만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관리법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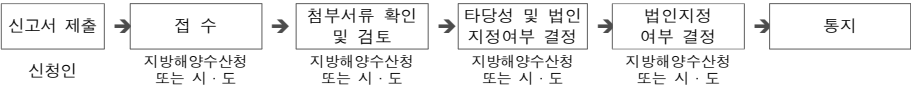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임원의 성명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화물의 경비 등에 대한 경비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경비료 등의 산출근거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항만배후단지 지정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요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항만배후단지의 명칭							
지정대상 지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치						
	면적						
	토지이용현황 (㎡)	지목별					
		면적					
개발기간							
개발방법							
유치업종							

「항만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서	수수료 없음
------	-----------------------	-----------

(뒤쪽)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 업 면 적		㎡		
사 업 목 적								
시 행 방 법				사 업 기 간		~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면 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규모							
자금조달계획	내 자	자기 자금	융자금	소계	외 자	차관	기타	소계
주요변경사항								

「항만법」 제5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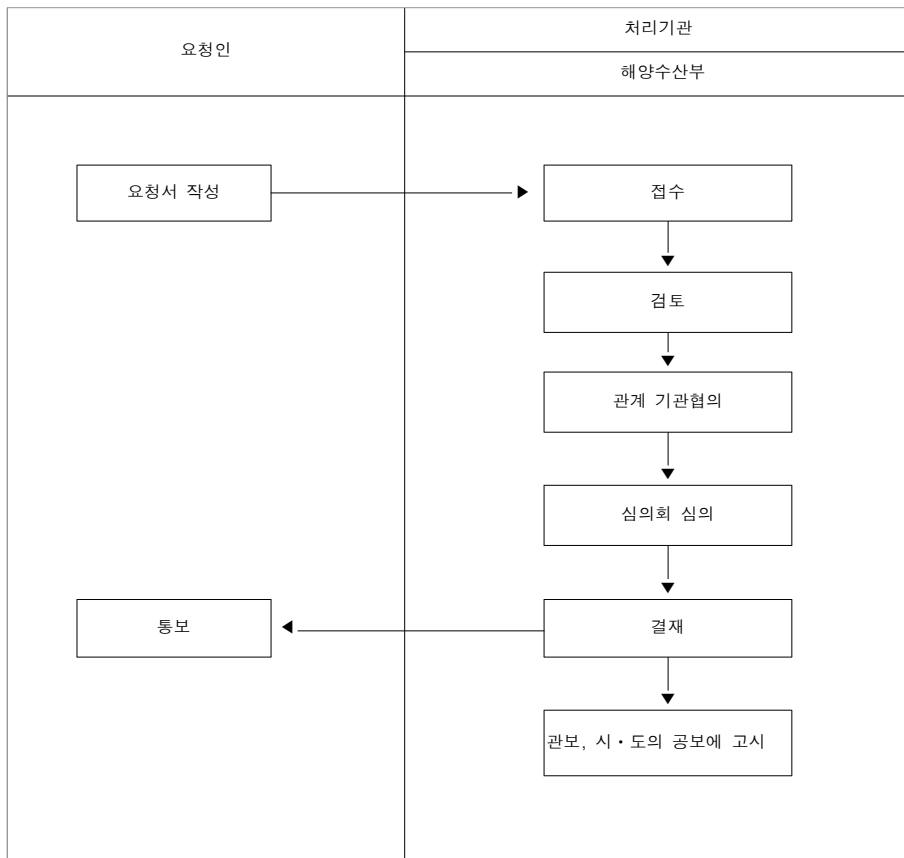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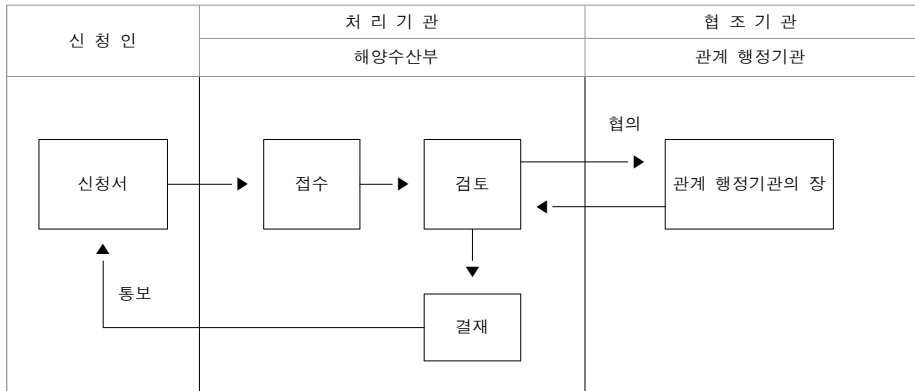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첨부서류	1. 「항만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2.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3.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4.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5.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6.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7.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 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서류(「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영향 평가 대상사업에 한정한다)
	10.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귀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11.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12. 「항만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3.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서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의 명칭	실시계획승인일	
	사업구역의 위치 및 준공 면적		
	시설의 개요		
	총사업비	천원	시행기간

「항만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확인을 받고자 준공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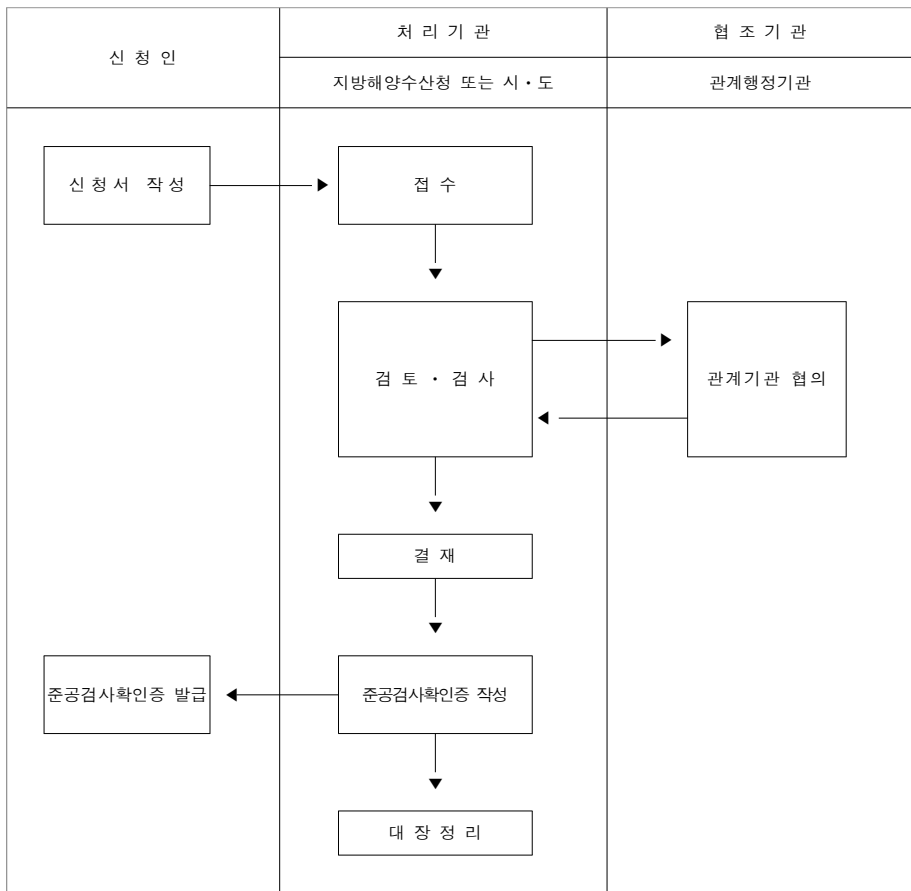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성 명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귀하가 시행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확인을 하고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사업명
2. 실시계획 승인일
3. 위치
4. 시행면적 m²
5. 준공 연월일
6. 준공인가 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직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명칭			
소 재 지			
사업의 내용	허가 연월일	년 월 일	
	사업 내용		
준공 전 사용대상시설			
준공 전 사용사유			
준공 전 사용기간			
전체공사의 준공예정일			

「항만법」 제58조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준공 전 사용

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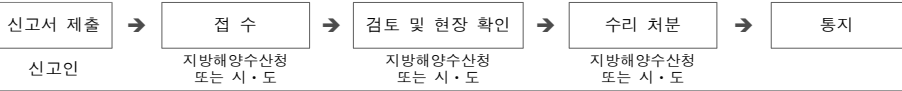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각 1부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항만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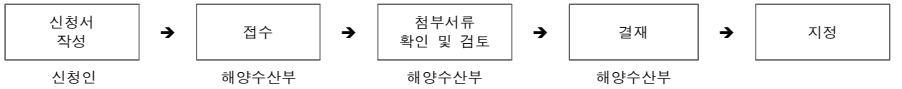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철지(80g/㎡)]

1종 항만배후단지 [] 입주계약 입주변경계약 신청(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이메일주소(담당자명 / email)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내용	사업명			
	투자규모(자본금)	원 (US \$ 상당)	외국인 투자비율 및 투자금액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주생산품		
	상세세분류)			

변경계약사항

「항만법」 제7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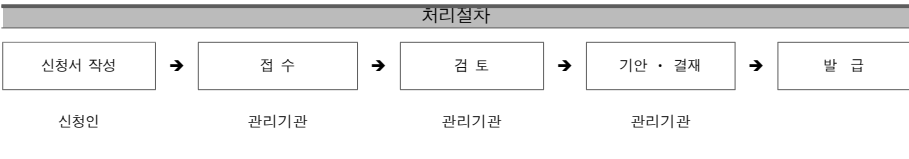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2.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면허·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5.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항만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관리기관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토지 처분신청서
[] 공장등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처분·양도 내용	(전화번호:)			
	공장 소재지			
	용지 면적(㎡)	건축 면적(㎡)	건설 공정	%
	기준공장면적을 달성비율(제조업 공장 설립 완료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처분(양도)가 격(백만원)	대지가격	건물 감정평가액		
	대금 지급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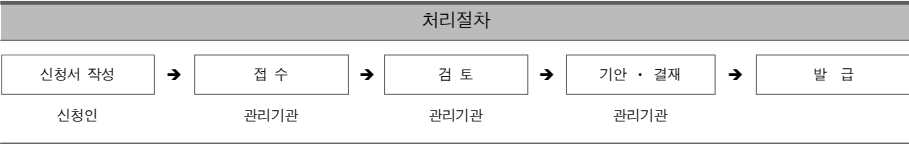
처분(양도) 사유

「항만법」 제7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양도)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처분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사업시행자 (피허가자)	
주소	(전화번호:)
행정처분 내용	
공사중지, 항만시설 사용중지 기간	년 월 일로부터 개월
행정처분 사유	
「항만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토지출입(일시사용) 통지서	
출입 또는 사용 목적	
출입 또는 사용 기간	
제거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장애물의 종류	.부터 (일간) .까지
「항만법」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출입(사용)인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귀하	

제 호

허 가 증

성 명
생년월일(남/녀)
주 소
위치 또는 장소
허가내용
기 간 부터 까지

「항만법」 제8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작성 등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위 사람에게 토지에의 출입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앞면)

토지출입(일시사용)증		사진 (3.5cm × 3cm)	
성명			
주소			
유효기간	부터 까지	(일간)	
위 사람은 「항만법」 제8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인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귀하			

74mm × 52mm[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주의사항

1. 이 증표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때에 항상 지녀야 합니다.

2. 이 증표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표는 대여하지 못합니다.

4. 이 증표를 잃었을 때에는 즉시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입니다.

재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대방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처분명	명 칭		
	소재지		
손실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			
재결신청자가 산출한 손실액			
협의의 경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항만법」 제9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토지수용위원회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행위허가(신고)내용	[] 건축물의 건축 [] 인공구조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위치			
면적 (㎡)			
근거법령			
허가일자	년 월 일	허가권자	
공사(사업) 진행사항	공사(사업) 진척도 %		

「항만법」 제9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사업시행계획서 1부 2. 사업진행사항(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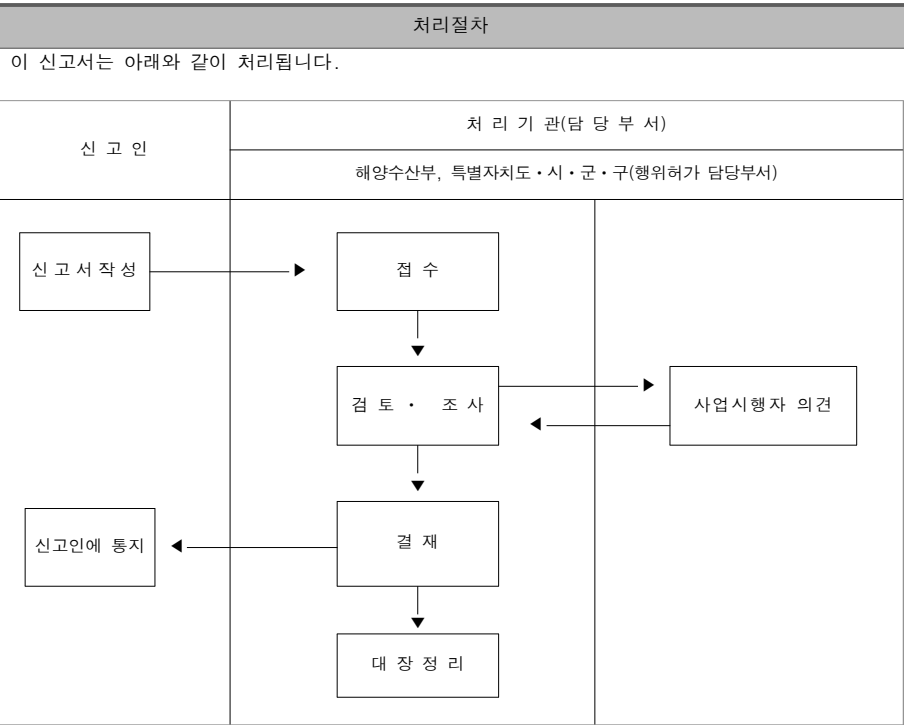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허가(승인)일 및 근거		
	허가(승인)목적 및 개요		
	준공기간		
	공사공정률		
	양도 사유		

「항만법」 제10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합니다.

양도인	성명	년	월	일
	주소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신고인	접수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전체공정 검토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결재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항만정책과	
연 락 처	044-200-5921